

2024년 증평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

증평군 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증평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26일

증 평 군 수

1 사업개요

가. 지원규모 : 2개소

나. 지원대상

- 사업 공고일 현재 증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(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)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
□ 소상공인 기준 :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

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-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

다. 지원내용 :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1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80% 이내)

항 목	상세내용
인테리어 개선	도배, 도색, 바닥공사, 전기·조명공사 등
상품배열 개선	전시대, 진열대 등
화장실 개선	화장실 설비 개선(판매시설 내 위치한 경우에 한함)
시스템 개선	POS기기 신규 설치, 판매정보관리 프로그램 설치 등
옥외간판 교체	채널간판, LED간판, 철제간판 등

※ 유의사항

-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
- 시설 개선비의 20%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,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
(예)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110만원(공급가액 100만원, 부가세 10만원)일 경우
→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100만원의 80%(80만원) 이내 지원, 나머지 자부담

라. 지원 제외대상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[붙임2]
-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
- 휴·폐업 신고를 하였거나, 사실상 휴·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
-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해 기 지원받은 사업자
-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
- 연 매출액 증빙 불가 업체 및 연 매출액(2023년 기준) 10억 이상 사업장(영세한 소상공인 우선 지원)

※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

-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자
- 사업자 무등록자, 무점포 사업자
-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- 사업장 소재지가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업자
- 농업, 어업, 임업 관련 업종(관련 부서 지원사업 활용)

마. 지원불가 품목

- 건물 신·증축비, 렌탈비, 일회성 소모품 구입비 지원 불가
- PC, TV, 냉장고, 냉·난방기, 정수기 등 자산성 물품 지원 불가

2

신청방법 및 절차

가. 접수기간 : 2024. 7. 26.(금) ~ 8. 8.(목)

나. 접 수 처 :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

다. 접수방법 : 방문 접수

라. 선정발표 : 2024. 8. 14.(수) 개별 통보*

*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SMS(문자메시지) 개별 통보

마. 제출서류

구 분	제 출 서 류
신청서식 (필 수)	1. 지원신청서 1부(군 경제기업과 비치)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3.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(아래 2가지 서류 중 1부) 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(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) 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종업원이 없는 경우) 4. 매출액 증명서류(2023년) 1부 - 과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간이과세자 포함) - 면세사업자 :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5. 건축물 대장(점포 면적 및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용) 1부 6.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. 표준견적서 1부
신청서식 (해당 시)	1. 옥외광고업 등록증(간판, 네온류 제작·교체 시) 2. 임대차계약서(임차사업자인 경우) 1부

3

심사기준 및 방법

-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 및 필요 시 사업장 현장 확인
- 배점기준(붙임1 참조)

평가항목	사업계획 적정성	매출액	사업운영기간	사업장 현황
배점(100)	20	20	20	40

- 배점기준에 따라 신청자 우선순위 확정 → 10개소 선정
 - ※ 예산 상황에 따라 후순위 선정자 추가 지원 가능
- 동점 시 매출액 적은 순 → 개업일 오래된 순 → 사업장 임차 여부 (임차사업자 우선)으로 대상자 선정
- 가점요소 : 착한가격업소, 모범업소 등 군수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
 - ☞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정 사업이 아니므로 가점 부여 후에도 타 업체보다 점수가 낮을 경우 탈락될 수 있음

4

신청 시 유의사항

- 서류 제출 : 총 2회[지원 신청서(계획), 지원금 신청서(완료 보고)]
 -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, 신청한 소상공인 중 배점표에 의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
- 지원대상 취소 사유
 - 지원결정 통보(일)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
 - 사전 승인 없이 제작업체, 사업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
 - 신청업체가 부도, 휴·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 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 -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기타 사업 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군수가 판단한 경우
 - ※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

○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

- (사업 변경) 사업변경신청서[기타서식 1] 제출

※ 변경시행 전 신청서 제출 → 승인 절차 완료 후 시행

- (사업 포기) 포기신청서[기타서식 2] 제출

※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중에서 선정(다음 연도 지원 불가)

○ 공급업체(시공·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) 선정

- 공급업체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이 정비하려는 시설물과 연관된 업체 선정
-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는 공급업체 선정 불가

○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

-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필요 시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할 수 있음
-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 판단

○ 지원금 지급

-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‘전자세금계산서’와 ‘입금확인 서류(입금증 등)’ 제출을 원칙으로 함
-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
- 사업기간 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

5 | 기타사항
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
- 문의처 :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(☎043-835-4013)

평가항목		평가지표		평 점				
평가기준				매우 탁월	탁월	우수	보통	미흡
사업계획 (20점)	계획 적정성	사업계획의 적정성, 명확성		10	8	6	4	2
	타당성	추진내용과 소요 비용 등의 적정성		10	8	6	4	2
경영현황 (80점)	매출액 기준 (20점)	점포 연 매출액 기준		20	16	12	8	4
				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 ~7천만원 미만	7천만원 이상 ~1억원 미만	1억원 이상 ~3억원 미만	3억원 이상 ~10억원 미만
	운영 기간 (20점)	사업자등록일 기준 점포 운영기간		20	16	12	8	4
				12년 이상	10년 이상	7년 이상	5년 이상	3년 미만
	사업장 현황 (40점)	점포 면적		10	8	6	4	2
				66㎡ 이하	132㎡ 이하	165㎡ 이하	231㎡ 이하	232㎡ 이상
		점포 형태		10		5		
				임차		자가		
		상시 근로자 수	기타 업종	20	16	12	8	4
				0명	1명	2명	3명	4명
	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			1명 이하	2~3명	4~5명	6~7명	8명 이상
가산점 (3점)	착한가격업소 등			3점				
합계	103	※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, 가산점은 최대 3점 인정						

붙임2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
표준산업분류	업종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